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법령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재발급 신청서식 본문 중 한자 이음 기재를 삭제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1항제5호)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제5항 신설, 안 별표7 제1호나목 개정)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9조의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괄호 안의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제26조에 따른 경로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으로의 전환 등 자체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경우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준경로당 지정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위원회 포함) 등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경로당 지정·

지원 및 자체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9제3항제3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로 한다.

별표7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준경로당의 경우 1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별표7 제2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설별	사무 실	식당 및 조리 실	상담 실 또는 면회 실	집회 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 실	화장 실	물리 치료 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 실	전기 시설	강의 실	휴게 실	객실	공동 목욕 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준경로당															
노인 교실	1					1					1	1			

별표7 제3호 중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를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준경로당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발급 재발급	30일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규발급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 <2022. 11. 22.>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신규: 10,000원 재발급: 2,000원
재발급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제출 생략) 1부	
재발급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생략) 1. ~ 4. (생략)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영하려는 <u>양로시설 및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u> -----) 각 1부 6. (생략) ② ~ ③ (생략)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영하려는 <u>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에는</u> -----) 각 1부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③ (생략) ④ (신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6조에 따른 경로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으로의 전환 등 자체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을

⑤ (신 설)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생 략)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	<u>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u> 2. <u>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경우</u> 3. <u>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⑤ <u>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준경로당 지정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위원회 포함) 등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경로당 지정·지원 및 자체 정비 등을 할 수 있다.</u>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경로당 : -----
--	--

상(섬 또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생략)

2. 시설기준

구분 시설 별	사무 실	식 당 및 조 리 실	상 담 실 또 는 면 회 실	집 회 실 또 는 강 당	프 로 그 램 실	물 리 치 료 실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거 실 또 는 휴 게 실	강 의 실	휴 게 실	공 동 목 욕 장	기 타 부 대 시 설
노인 복지 관	1	1	1	1	1	1	1					
경로 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3. 설비기준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섬 또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준경로당의 경우 1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다. (생략)

2. 시설기준

구분 시설 별	사무 실	식 당 및 조 리 실	상 담 실 또 는 면 회 실	집 회 실 또 는 강 당	프 로 그 램 실	물 리 치 료 실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거 실 또 는 휴 게 실	강 의 실	휴 게 실	공 동 목 욕 장	기 타 부 대 시 설
노인 복지 관	1	1	1	1	1	1	1					
경로 당						1		1	1			
준경로 당												
노인 교실	1					1			1	1		

3. 설비기준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 비 기 준	(현행과 같음)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준경로당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